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위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689 발의연월일: 2024. 12. 19.

발 의 자:김위상・우재준・박정하

김예지 · 김소희 · 김상훈

김민전 · 김선교 · 임이자

강승규 · 김성원 · 신동욱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식지를 보전하고, 자연상태에서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·복원하는 조치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,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서식지 소실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고립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하여 보호림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(안 제13조).

법률 제 호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3조제3항 중 "등을"을 "·보호 등을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 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환경부장관은 태풍, 홍수, 강풍 등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서식지 주변의 보호림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3조(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	제13조(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		
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) ①・	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) ①ㆍ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
③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	3		
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			
책의 시행과 멸종위기 야생생			
물의 증식·복원 <u>등을</u> 위하여	<u>• 보호 등을</u>		
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			
장과 시・도지사에게 협조를			
요청할 수 있다.			
<u><신 설></u>	④ 환경부장관은 태풍, 홍수,		
	<u>강풍 등 자연재해의 발생으로</u>		
	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피		
	해 예방을 위하여 서식지 주변		
	의 보호림 설치 등 필요한 대		
	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 <u>.</u>		
<u>④</u> (생 략)	<u>⑤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		